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가.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상황 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환자의 보호 및 치료(안 제3조 ~ 제4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안 제9조)
- 위탁 관련 운영(안 제10조 ~ 제13조)
- 이용 제한(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1. 9.)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3. 12. 29.
- 회부일자 : 2024. 1. 9.

2.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상황 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환자의 보호 및 치료(안 제3조 ~ 제4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안 제9조)
- 위탁 관련 운영(안 제10조 ~ 제13조)
- 이용 제한(안 제14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가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의 체계 구축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재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지원을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업무, 운영비 지원,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15조(의료비 지원)에서는 군수가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2]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년월일 : 2023. 12. 29.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상황 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환자의 보호 및 치료(안 제3조~제4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안 제9조)
- 마. 위탁 관련 운영(안 제10조~제13조)
- 바. 이용제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20.~2023.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없음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는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환자의 보호 및 치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경찰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위해방지 및 응급입원 조치
2. 평창소방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이송조치
3. 평창군은 치료 병상 확보 노력 및 환자 사후관리

제5조(정신건강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 조치 및 환자 보호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훈련

8. 그 밖에 법 제7조 및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및 사업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에 수탁의사가 없으면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

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위탁금 등의 운용)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7조(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평창군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경찰서

2. 평창소방서

3.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

료, 가족지원, 지역주민 보호 등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

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건강증진과장 허현
연락처	(033) 330 - 4880